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2명(순경 92명)을 증원하는 한편,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해양안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291명(경사 6명, 경장 120명, 순경 165명)과 항공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149명 중 89명(경감 9명, 경위 26명, 경사 21명, 경장 22명, 순경 11명), 해양경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288명 중 96명(경감 5명, 경위 5명, 경사 19명, 경장 13명, 순경 16명, 7급 18명, 8급 20명)을 평가대상 재사정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해양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 · 구정원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중 총계 “11,934”를 “12,02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910”을 “11,002”로 하며, 총경 이하 “10,901”을 “10,993”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7조제1항 관련)

1. 해양경찰청

평가대상 조직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수사국 1개 과	10명	2023년 6월 30일까지
2) 국제정보국 2개 과	5명	2023년 6월 30일까지

2.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지방해양경찰청 5개 과	5명	2023년 6월 30일까지
2) 해양경찰서 1개 과	1명	2023년 6월 30일까지
3) 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1명	2023년 9월 30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해양경비 업무(지방해양경찰청)	70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2) 해양경비 업무(지방해양경찰청)	134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3) 항공단 업무(지방해양경찰청)	60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4) 해양경비 업무(지방해양경찰청)	173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5) 해양안전 업무(지방해양경찰청)	404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6) 형사 요원(지방해양경찰청)	51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7) 해양경비 업무(지방해양경찰청)	192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8) 해양오염방제 업무(지방해양경찰청)	41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5]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1,934</u>	<u>12,026</u>	+92
경찰공무원 계	<u>10,910</u>	<u>11,002</u>	+92
·	·	·	
·	·	·	
·	·	·	
총경 이하	<u>10,901</u>	<u>10,993</u>	+92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7